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8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0일
발 의 자: 김동욱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곽향기, 김길영, 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 박환희, 신복자, 왕정순, 유만희, 이병윤, 이상욱, 이숙자, 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(일명 ‘민식이법’)이 마련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.
-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등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안전 범위 중 교통안전에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추가하여 규정을 정비함 (안 제5조제4호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4호 중 “교통사고 및”을 “교통사고,”로, “안전사고”를 “안전사고,
보행자 통행 및 보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이 조례 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교통안전 : 등하교시 또는 교 육활동 중의 <u>교통사고</u> 및 어 린이 통학버스 <u>안전사고</u>와 관 련된 안전</p> <p>5. ~ 8. (생 략)</p>	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교통사고</u>, ----- ----- <u>안전사고</u>, 보행 <u>자</u> <u>통행</u> <u>및</u> <u>보호</u>----- -----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3100600000010

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김동욱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06.

회신일 : 2023.10.0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제4호 중 ‘교통사고 및’ 을 ‘교통사고,’ 로, ‘안전사고’ 를 ‘안전사고, 보행자 통행 및 보호’ 로 개정하여 교육 안전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교육청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
☎ 02-2180-7952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